사업방법서 별지

(주택화재보험)

1. **보험의 종류** : 화재보험/주택화재

2. **보험의 목적**

가. 동산(동물 제외) 및 부동산(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)

나. 법률상의 배상책임

다. 상실이익 및 이와 관련되는 각종 피보험이익

3. **보험기간**

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4. **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**

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.

5. **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**

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.

6. **기타 필요한 사항**

가.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

나. "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담보 특별약관"에 관한 사항

-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"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담보 특별약관"을 기본 부가한다.

다.

납입주기	가입연령
일시납	제한없음

단,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

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
라. "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" 운영에 관한 사항

- 적용근거 :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.
- 적용범위 :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.
  1)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 2)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- 기타
  1)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.
  2)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.

마.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은 주택화재보험으로 판매할 수 없다.

- 보험업법 제83조(모집을 할 수 있는 자)의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『임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) 또는 직원』이 판매자이고, 1보험증권으로 1천 세대 이상 일괄 가입하는 계약